서울시 길고양이 중성화(TNR)사업 표준지침

Ⅰ 관련근거

-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13조(구조보호조치 제외동물)
- 서울시 동물보호조례 제19조(길고양이 등의 관리)
- 고양이 중성화 사업 실시요령 (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 2016-17호)

Ⅱ 길고양이의 정의

▣ 법적정의

도심지나 주택가에서 자연적으로 번식하여 자생적으로 살아가는 고양이로서 개체 수 조절을 위해 중성화하여 포획 장소에 방사하는 고양이

▣ 일반정의

도시에서 자생적으로 번식해서 살아가는 고양이로 사람에게 친화적이지 않고 야생성을 가지고 있음

Ⅲ 길고양이 중성화(TNR)

▣ TNR 대상 : 몸무게 2.0kg이상인 길고양이

▣ TNR 제외 길고양이

- 수태 혹은 포유가 확인된 개체(단, 마취후 확인된 경우에는 중성화 수술을 한다)
- 기존에 중성화하여 방사한 개체

▣ 중성화 사업 일시적 중단

- 장마철·혹서기·혹한기 등의 외부환경 요인으로 중성화 수술 후 회복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중성화 사업 일시적으로 중단 할 수 있다.

▣ TNR 단계

1. 포획전 준비

가. 먹이주기 중단

포획 24시간 전부터 먹이를 중단해야 한다. 고양이가 배가 고파야 포획틀에 포획될 성공률이 높아지고 수술할 때도 먹이를 먹지

않는 경우가 더 좋기 때문이다.

나. 포획전 준비물

- 미끼 - 참치캔, 정어리캔, 고등어 등 냄새가 강한 먹이
- 덮개 - 포획틀을 충분히 덮을 수 있는 크기의 천이나 덮개 (덮개를 덮어두면 포획틀안의 고양이가 안정되어서 불필요한 상처를 입는 것을 막아준다)
- 미끼를 놓을 그릇이나 종이(A4용지)
- 포획덫을 고정할 케이블 타이
- 손전등(포획틀에 잡힌 고양이를 확인하기 위함)
- 기록지와 필기구(포획된 길고양이에 대한 정보 기록)
- 저울(포획덫에 잡힌 길고양이 무게 측정)
- 손소독제, 물병, 보호장갑

2. 포획덫 설치

가. 개체 포획 시는 발판식 통덫 등 길고양이와 사람에게 안전한 포획 틀을 사용하여야 한다.

나. 발판식 통덫

- 크기 : 800L X 240W X 290H (크기는 자치구 실정에 따라 다를 수 있다)
- 형태 : 후면 방사형태, 내부에 거칠거나 뾰족한 부분이 없어야 한다.
- 덮개 : 덫을 충분히 덮을 수 있는 크기의 두꺼운 천이나 불투명 비닐 등으로 만들어야 한다.
- 안내판 : 용도, 담당자, 연락처 등을 기재한 안내판을 비등에 젖지 않게 비닐을 씌우거나 코팅하여 부착 한다.

이 덫은 길고양이 중성화(TNR)사업을 위한 고양이 포획용 덫입니다.
덫을 옮기거나 가져가지 마세요

- 길고양이 중성화사업(TNR)을 위해 포획중입니다.
- TNR사업은 길고양이로 인한 시민불편을 해소하고 인도적으로 길고양이 수를 조절하기 위한 일입니다. 시민여러분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000구청, 담당자 000, 연락처 000

다. 포획덫 설치방법

- 설치위치 : 평평하면서 담이나 울타리 옆
  (먹이주는 곳을 알고 있다면 먹이주는 장소)
- 설치방법

① 먹이를 주던 장소의 평평한 면에 설치하며 가능하면 담이나 울타리 등에 한쪽 면을 접하게 하여 쉽게 흔들리지 않게 한다.

② 덫의 바닥에 있는 발판을 감추기 위해 신문지를 가로로 접어서 덫의 바닥에 놓는다(바람이 부는 날에는 신문지를 깔지 않도록 한다.)

③ 덫의 바로 뒤에 미끼 한 스푼을 놓는다. 입구까지 지그재그 형태로 먹이국물을 뿌려준다. 덫의 안쪽 미끼 놓는 곳에 1/4 스푼정도의 먹이를 놓는다. 1/4정도 스푼의 먹이를 덫 앞에 15cm 정도 앞에 놓는다.

④ 여러 개의 덫을 설치한다면 서로 입구가 다른 방향을 보도록 설치한다. 덫이 설치된 후에는 조용히 물러나서 포획되기를 기다린다.

3. 포획 및 이동

가. 포획동물 확인

- 포획이 확인되면 즉시 차광천, 비닐 등으로 포획 틀을 완전히 덮어 대상 길고양이를 진정시켜 보호한다.
- 포획덫을 포함한 길고양이의 무게를 측정하고 길고양이 무게가 기준무게 이하이거나 수태 또는 포유중이라면 즉시 방사한다.
- 포획동물에 대한 상세한 정보(포획장소, 몸무게, 특징 등)를 기록한다.
- 포획할 동물이 더 있다면 포획된 동물은 신속히 다른 곳으로 옮겨서 기다린다.

나. 포획후 이동

- 케이블타이 등으로 입구를 단단히 고정하여 이동 중에 고양이가 탈출하지 않도록 한다.

- 포획덫안에 손가락을 넣지 않아야 한다.
- 포획덫 그대로 길고양이를 이동하고, 포획덫 바닥에 종이나 비닐 등을 깔아 주변이 지저분해지지 않도록 한다.

다. 포획덫의 청소 및 소독

- 포획에 사용된 덫은 반드시 물로 세척하여 분변 등 찌꺼기 등이 남지 않아야 하고 4급 암모늄 제제 등의 소독약으로 소독하여야 한다.

4. 중성화 수술

가. 중성화수술

- 중성화 수술은 수의사가 하여야 한다.
- 중성화 수술은 포획을 기준으로 만48시간 이내에 중성화 수술을 실시한다.

나. 마취

- 마취방법 : 정맥 또는 근육주사, 호흡마취

다. 수술방법

- 수술부위의 털을 제모하고 소독을 한다.
- 수컷은 고환을 모두 제거하여야 하며 수술부위는 음낭 정중부위에 실시한다. 절개부위는 최소로 하도록 하고 절개부위 피부는 추후 발사할 필요없는 흡수사를 이용하며 단순봉합 또는 생체본드를 이용한다.
- 암컷의 경우 멸균된 수술 기구를 이용하여 최소 절개를 하여 시술 한다. (절개부위는 자궁축농증, 임신말기 등을 고려한 수의사의 판단에 따른다) 양측 난소를 제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자궁조직을 최대한 제거하도록 한다. 봉합 방법은 복막, 지방층, 피부 3단계를 흡수사를 사용하여 봉합하며 피부는 추후 발사할 필요없는 흡수사를 이용한 매몰법을 사용하거나 생체 본드를 이용한다.

라. 수술부작용 예방

- 광범위 항생제(72시간 지속)를 피하 또는 근육주사 한다.
- 진통제를 피하 또는 근육주사 한다.

마. 귀표식

- 중성화 수술시 개체 확인을 위해 좌측 귀 끝부분의 약 1cm를 제거하는 방법을 사용하도록 한다.
- 귀 끝에 지혈겸자를 남긴 상태에서 칼이나 보비(전기 수술기)로 귀끝 부위를 자른다.
- 잘린 끝 면에 지혈 파우더, 혹은 보비(전기 수술기)를 이용 지혈한다.
- 지혈겸자를 제거하고 지혈여부를 확인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바. 예방접종

- 광견병 예방접종을 접종한다.

사. 후처치

- 수술이 끝나면 고양이를 따뜻하고 안전한 곳으로 이동시켜 안정시킨다. 이 때 어두운 천으로 덮어두면 안정을 취하는데 좋다.
- 수술 후 마취가 깨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도록 안전한 장소에서 보호하여야 하며, 출혈·식욕 결핍 등 이상 징후가 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 후처치 기간은 중성화 수술 후 수컷은 24시간, 암컷은 72시간 이상이어야 한다. 단, 수의사가 환축의 상태, 기후여건을 판단하여 후처치 기간을 증감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보호동물 개체관리카드(동물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에 사유를 기록하여야 한다.

5. 방사

가. 방사

- 포획한 장소에 방사하여야 한다. 다만 포획한 장소에 방사한 후 학대가 재발하거나 생존에 지장이 있는 변화가 발생한 경우 포획한 장소 이외의 장소에 방사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보호동물 개체관리카드(동물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에 사유를 기록하여야 한다.
- 방사를 할 때는 주변에 다른 고양이가 없을 때 한다.
- 방사할 때는 케이지의 입구를 차도 반대쪽으로 향하게 하여야

하며, 덮개를 걷어낸 후 10분 쯤 기다려 주변을 인식하게 한 후 덫문을 열어준다.

- 방사한 장소에는 신선한 물과 사료를 둔다.

나. 방사후 모니터링

- TNR사업 지역에 캣맘이 있으면 TNR된 길고양이 방사 후 모니터링을 요청한다.

6. 안전수칙

- 반드시 파상풍 예방접종을 맞아야 한다.
- 장비, 기구 등의 청소, 소독에 대한 절차를 숙지한다.
- 포획 및 동물관리를 할 때는 보호장비를 항시 착용하여야 한다.
- 전염병이 의심되는 개체와 접촉한 경우는 장비 등을 신속히 소독을 실시하여야 한다.
- 동물에 의한 교상, 스크레치 등에 의한 상해를 입었을 경우 신속하게 흐르는 물로 세척하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는다.
- 인수공통전염병이 확인되면 의료기관, 관계부서에 보고한다.

※ 기타 지침에 명시되어 있지 않는 내용은 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16-17호에 따른다.